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32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고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8.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C, 2층에 있는 명함, 카달로그 제작 업체인 피해자 (주)D의 편집디자인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와의 업무상 갈등으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3. 14:4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던 피해자

출력일 :2019.01.03 11:37:4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보관 중이던 약 1,020개의 디자인 작업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디자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4, 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122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심시간 이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시간대인 2016. 9. 23. 14:4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디자인 작업파일의 삭제가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시간대에 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화장실 갈 때를 제

출력일 :2019.01.03 11:37:4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13

외하고는 달리 자리를 비운 적은 없는 점, 위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 외에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타인을 상정하기 힘든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기타 정황에 비추어 추정되는 방해된 업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기 _____

출력일 :2019.01.03 11:37:41